##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28

발의연월일: 2025. 1. 20.

발 의 자:민형배·문정복·박지원

송옥주 · 이개호 · 정동영

강유정 · 김문수 · 전진숙

조계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월 5일인 식목일을 나무 생육이 적합한 시기인 3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식목일은 국무총리 훈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매년 4월 5일로 지정하였으나, 관련법이 없습니다. 주5일 근무제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공휴일에서조차 제외됩니다.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이 약해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를 6.5도라고 분석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은 계속 높아져, 3월 중순에 이미 6.5도 이상을 기록합니다. 지금 식목일보다 20일 이상 빠릅니다. 변화한 기후여건을 고려한 식목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월 20일을 식목일로, 식목일이 있는 그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교육현장 등 사회 전반에 나무의 중요성을 되

새겨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나무심기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제2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식목일 지정) ① 대기 및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며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식목일로 하고, 그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목주간에 식목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제20조의3(식목일 지정) ① 대기    |
|                    | 및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나무        |
|                    |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       |
|                    | 랑 정신을 북돋우며 산지의 자       |
|                    | 원화를 위하여 매년 3월 20일      |
|                    | 을 식목일로 하고, 그 주간을       |
|                    | 식목주간으로 한다.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
|                    | <u>항에 따른 식목주간에 식목일</u> |
|                    | 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       |
|                    | 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
|                    | 한다.                    |